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26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김예지 · 박덕흠 · 김선교
유용원 · 최형두 · 정성국
배현진 · 고동진 · 임종득
서미화 · 김 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아가, 해당 법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선으로 공개모집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 이는 장애인 학대 등에 관한 감시·시정권고 기능을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

히 규정하여,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
익옹호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
조의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11제4항 전단 중 “지정하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 위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을 “위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위탁 시 공개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11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 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u>지정하여</u>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 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 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 ----- ----- ----- ----- <u>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u> ----- -----. ----- ----- -----.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기준 · 운영, 상담원의 자격 · 배 치기준, <u>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 정, 위탁</u> 및 비용지원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⑤ ----- ----- ----- <u>위탁</u> ----- ----- -----.